

##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4. 14.  
제11차 개정 2005. 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원의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해외연수라 함은 학문 연찬을 위한 외국에서의 학술연구, 학위과정 이수, 학사제도 시찰 등을 말한다.

② 해외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총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해외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1. 학교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시찰 및 자료수집
2. 국비 연구교수 파견
3.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4. 기타 총장의 명에 의한 연구 또는 시찰

**제3조(연수구분)**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에 따라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한다. 방학중 또는 학기 중 60일 이하의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단기연수라 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장기연수라 한다.

② 학위과정 이수 또는 학술연구 등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수 시에는 휴직 처리한다.

**제4조(자격)** ① 이 규정에 의한 단기연수는 본교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장기연수 교원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파견 연수는 본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기준에 의한다.

(조 개정 2003.8.29)

**제5조(기간 및 회수제한)** ① 장기연수의 기간은 1회에 6월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학위취득의 경우 총장이 2년까지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본교 재직기간 중 해외연수의 허가회수는 4회까지로 하며, 통산하여 5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삭제 (2000.6.15)

④ 연구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3.8.29)

**제6조(구비서류)** ① 삭제 (1997.4.24)

② 삭제 (1994.8.22)

③ 삭제 (1997.4.24)

④ 해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 시기 내에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해외연수(파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초청장 (외국기관 또는 연구단체 발행) 1통
3. 해외연수(파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4. 해외연수(파견) 경비계산서 1통
5. 소속 대학장 의견서 1부
6. 연구실적목록 1부

**제7조(연수자 수)** ① 삭제 (1997.4.24)

② 삭제 (1997.4.24)

③ 연수교원의 수는 소속 학과 교원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4명 미만의 학과는 연수교원의 수를 1명으로 한다. 다만, 학과 통폐합에 따른 전공학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속학과 재적교원 수의 1/2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8.30)

**제8조(연수신청)** ①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중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연수 예정 기

간이 후반기(9.1 - 익년 8.30)의 경우 4월30일 이전, 전반기(3.1 - 익년 2.28)의 경우 10월 31일 이전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비과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해외연수는 개시일을 학기초로 하고 종료일을 학기말로 하여 허가하며 학기도중의 개시와 종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 ① 연수교원의 자격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학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삭제 (1999.5.20)

③ 삭제 (1999.5.20)

④ 삭제 (1999.5.20)

⑤ 연수교원의 자격심사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신청 교원의 자격 및 요건
2. 과건대상국 및 연구기관의 타당성
3. 재직년한
4. 소속대학장의 의견
5. 연구실적
6. 연구계획
7. 외국어 구사능력

⑥ 삭제 (1999.5.20)

**제10조 (연수자 선정)** ① 총장은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당해년도 연수 교원을 선정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과학재단 등의 국비지원에 의한 연수는 학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보고만 한다.

② 연수자를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하여야 할 경우, 연수의 목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나 연수기관(또는 비용부담기관)의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정 또는 추천한다.

1. 본교에서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우선한다.
2. 과거 6월 이상의 해외연수의 회수가 적을수록 우선한다.
3. 과거 5년간 단과대학별 국외과건자 수가 적을수록 우선한다. 이때 과건자 수가 같으면 과건된 년도가 오래 될수록 우선한다.
4. 과거 5년간 학과별 국외과건자 수가 적을수록 우선한다.
5. 학교발전의 공헌도가 높을수록 우선한다.

**제11조(처우)** 장기해외연수 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2조에 의한다.

**제12조(임무)** ① 삭제 (1997.4.24)

② 삭제 (1997.4.24)

③ 본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사람은 연수종료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본교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해외연수교원이 출국할 때에는 출국 전에 총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하였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 발표보고서(별지 제 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총장은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을 유보시킬 수 있다.

**제13조(복귀)** ①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의 담당교원의 현저한 부족 등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은 그 교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복귀불응자에 대한 조치)** 전조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복귀하여야 할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연수)** 국내과건 교류 교수 등 국내연수의 경우도 국외연수에 준해서 시행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연수중인 교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15, 2005.8.30)

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해외연수(파견)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 년수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파견)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수목적 :
2. 연수기관 :
3. 연수기간 :
4. 초청자 :
5. 연수지 국명 :
6. 경 비 :
7. 외국어 구사 능력 :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해외연수(파견)계획서

소 속 :

성 명 :

위 본인의 해외연수(파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연수의 동기 및 경위

2. 해외연수중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3. 경비예산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위 본인 :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실적물 발표보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연 구 과제명	(국한문) (영문)				
1. 발표논문명 (또는 저서명)	공동연구자명		게 재 지 명		발행일
내용요약 붙 임 : 별쇄본 1부.					
2. 발표논문명 (또는 저서명)	공동연구자명		게 재 지 명		발행일
내용요약 붙 임 : 별쇄본 1부.					
3. 발표논문명 (또는 저서명)	공동연구자명		게 재 지 명		발행일
내용요약 붙 임 : 별쇄본 1부.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